"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의 설치기준 지침』 제정 알림

1. 예방안전과 - 4642(2020.3.13)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기준 지침』 제정과 관련 됩니다.

2. 2015.9.22.자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화재 시 환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피공간 등 대피시설을 설치토록 건축법시행령(제46조제6항)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위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협소하게 설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TF팀을 구성,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의 설치기준 지침』을 제정하여 화재 취약대상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 및 전 소방서에서는 시행에 자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침 시행일 : 2020.4.1.**
나. 관련부서 및 소방서 협조사항
1) 관련부서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 건축주택과
가) 영업신고 수리 시 지침적용 안내
나) 도내 전 시군 관련부서 배포 및 시행안내
다) 관련단체 교육 등 소집 시 지침적용 홍보 및 교육

2) 소방서
가) 건축허가 동의시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권고
나) 관련단체 교육 시 지침적용 홍보 및 교육

붙임 : 1.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기준 지침 결재사본 1부.
2. 피난약자시설 등의 설치기준 지침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식품의약과장, 진주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통영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사천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김해동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김해서부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밀양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거제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양산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의령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함안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창녕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고성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남해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하동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산청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함양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 거창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합천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건축주택과장

예방기획담당 **서석기** 예방안전과장 전결 2020. 3. 16. **박정미**

협조자 지방소방위 **정종국**

시행 예방안전과-4703 (2020. 3. 16.) 접수 건축주택과-5663 (2020. 3. 31.)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사림동) / http://www.gnfire.go.kr

전화번호 055-211-5412 팩스번호 055-880-9239 / corea4392@Korea.kr / 대국민 공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 2020.9.25. - 10.25.(31일간)